

[서식 예] 구상금청구의 소(회사 동료의 은행대출금을 보증한 연대보증인)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〉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구상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만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사실관계

원고는 20○○. ○. ○○.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의 간절한 부탁으로 피고가 소외 ⑥⑥은행으로부터 금 ○○○만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·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(갑 제1호증 대출계약서 참조).

2. 원고의 대위변제



- 가. 채무자인 피고는 위 대출금을 약정한 기일에 갚지 못하여, 소외 ●●은행은 원고의 급료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(갑 제2호증 통고서).
- 나. 원고는 가압류를 시키겠다는 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(갑 제3호증 통고서), 피고는 당장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여,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다급한 급료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 ○○○만원을 소외 ⑥●은행에 변제하였습니다(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).

3. 피고의 채무불이행

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 ○○○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소외 ⑥⑥은행에 대위변제한 금 ○○○만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대출계약서

통고서(◉●은행의 원고에 대한 통고)

통고서(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고)

대위변제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 위 원고 000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